탄 원 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귀중 | 항소심 2026노2322

피고인 박안수(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원심 2025고합1764(2025고합1766 병합)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저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직시하면서도 피고인 한 사람에게 귀속되는 책임의 범위를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드립니다. 군이 국회의 헌법상 기능을 제한하는 일에 관여한 사태는 결코 가볍게 평가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사전에 계획을 세운 행위와 계엄 선포 뒤 실행에 참여한 행위, 지휘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부분과 다른 이의 지시를 전달한 부분, 그리고 위해를 확대하지 않으려 한 선택을 구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책임을 덜어 달라는 말보다 먼저, 각 행위에 맞는 책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2. 원심이 인정한 중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1일 선고를 정리한 공개 보도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이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을 발령하고 그 내용을 근거로 당시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청하여 국회 2차 봉쇄가 발생한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국가기관의 권한을 이용하여 국회의 활동을 제한한 결과는 엄중하게 평가되어야 마땅합니다.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피고인에게는 그 지위에 상응하는 판단과 통제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청하는 것은 이러한 잘못을 지우는 판단이 아니라, 그 책임의 크기가 확인된 행위와 실제 결과에 비례하도록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3. 사전 계획과 실행 단계의 역할을 구분해 주십시오

같은 원심 선고를 재구성한 자료에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준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의 지위에서 내란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관여의 정도에 관해 다른 피고인들과 구별되는 사정입니다.

원심이 이미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는 점도 존중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형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실 때, 계엄 선포 전에 관여한 범위와 선포 뒤 직접 결정·지시한 행위의 범위를 나누어 살피면, 높은 직위에서 비롯한 무거운 책임과 구체적 실행의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사실을 새로운 사유처럼 내세우기보다는 그 의미가 다른 정상들과 균형을 이루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4. 포고령 발령과 국회 2차 봉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주십시오

피고인의 포고령 발령과 경찰에 대한 국회 출입 차단 요청은 원심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핵심 행위입니다. 그 요청으로 국회 2차 봉쇄가 이루어졌다는 원심 판단 역시 가볍게 다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양형에서 개인별 책임을 정할 때에는 포고령의 작성과 확정, 피고인 명의의 발령, 경찰청장에게 전달한 구체적인 내용, 경찰의 후속 지시와 현장 집행을 하나의 행위로 뭉뚱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부분은 그대로 책임을 묻되, 다른 관계자의 행위까지 아무 구별 없이 귀속하지 않도록 기록을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사태 전체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개별 책임이 모두 정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5. 공포탄·테이저건 사용 거부의 의미와 한계

피고인은 2024년 12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특전사의 테이저건·공포탄 사용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원심 선고 재구성 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사용 거부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전합니다. 이 사정을 과장하여 다른 위법한 행위의 책임을 덜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상황에서 위해 수단을 허용하지 않은 선택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그 선택 자체는 개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중대한 과오와 추가적인 위해를 억제한 행위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원심이 이미 고려한 사유임을 전제로, 그 행동의 확인된 범위와 한계가 전체 양형 속에서 합당한 무게를 갖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6. 진술의 경위와 사건 이후 태도를 공정하게 살펴주십시오

사건 당시의 판단을 돌아보는 피고인의 설명이 어디까지 일관되고 진실에 부합하는지는 재판기록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2024년 국회에서 한 답변에는 포고령 전달 경위와 위해 수단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담겨 있으나, 당사자의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객관적인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과 유리한 진술을 같은 기준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곧바로 반성의 부재로 보아서는 안 되지만, 객관적인 증거로 드러난 책임 회피가 있다면 그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어느 한쪽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재판부가 직접 듣고 확인하신 진술의 경위와 태도를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7. 확인되는 개인별 사정을 알맞은 무게로 고려해 주십시오

피고인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지위는 오랜 군 복무의 경력이면서 동시에 헌법과 국민을 지킬 더욱 무거운 의무를 뜻합니다. 직책의 높음을 선처의 이유로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개된 원심 판단에 나타난 사전 준비·주도 여부와 공포탄·테이저건 사용 거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개별적 행동을 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피고인의 공로로 돌려서도 안 되며,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한 결정을 모두 피고인의 독자적 결정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무거운 지위상 책임과 실제로 확인된 선택을 함께 놓고 형의 균형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 형법 제51조에 따른 형의 균형을 부탁드립니다

형법 제87조가 정한 범죄의 중대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뒤의 정황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살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엄정함은 책임을 충분히 묻는 데서 나오지만, 그 책임을 개인별로 정확하게 가리는 데서도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포고령 발령과 국회 2차 봉쇄라는 중대한 결과가 불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그와 함께, 사전 준비에 관여한 범위와 위해 수단 사용을 거부한 사정도 이미 원심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시면서, 각 사정이 서로 상쇄되는 숫자처럼 다뤄지기보다 그 실제 의미에 맞게 균형 있게 평가되도록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9. 결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걱정과 헌법질서에 가해진 상처가 작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형벌은 피고인 각자의 책임에 맞게 정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박안수 전 총장이 실제로 한 일과 그 결과, 그리고 확인되는 범위에서 위해를 줄이려 했던 선택을 빠짐없이 살펴주시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균형 있고 관대한 형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작성일:

탄원인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귀중

참고자료

[1]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9.28

2026년 9월 21일 선고영상 게시 안내 및 관련 사건 표시

https://djgodung.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cbub_code=&gubun=271&pageIndex=1&searchWord=&seqnum=311

[2] 뉴스하다, 이창호 | 2026.09.22

원심 선고 내용과 주요 양형사유에 관한 보도

https://newshada.org/6830/

[3] 아이뉴스24, 최기철 | 2026.09.21

원심 선고와 혐의별 판단에 관한 취재 보도

https://ibiz.inews24.com/v/2008018

[4] 참여연대「그사건그검사」| 2026.10.23 기준

항소심 사건번호·재판부 및 진행 경과 기록

https://watch.peoplepower21.org/WatchPro/case/332/

[5] 머니투데이, 안채원 | 2024.12.05

2024년 12월 5일 국회 질의에서의 피고인 답변 관련 보도

https://www.mt.co.kr/politics/2024/12/05/2024120516014581317

[6]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31 기준

형법 제87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87조

[7]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31 기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https://www.law.go.kr/법령/형법/제51조